
I. 들어가며

민법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방법으로 '법정상속'과 '유증(遺贈)'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예정하고 있다.¹⁾ 법정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자연인의 재산법상 지위가 자연인의 사망 후에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뜻한다.²⁾ 유증은 유언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주는 단독행위를 뜻한다.³⁾

그런데 우리 법현실에서는 법정상속이나 유증 이외의 방법으로 부(富)의 승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대표적 예가 생명보험과 신탁이다. 이러한 상속대용수단⁴⁾은 법

1) 사인증여(死因贈與), 즉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계약도, 유증과 동일한 기능을 함.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민법 제562조. 이하 법명의 표시가 없는 조항은 민법을 가리킴). 그러나 사인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고, 유증에 관한 모든 규정이 당연히 사인증여에 적용되는 것도 아님. 이 글에서는 사인증여에 관하여 별도로 검토하지 않음

2) 윤진수(2018), p. 289

3)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이 정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독행위로서,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친생부인(제850조), 인지(제859조), 미성년후견인의 지정(제931조 제1항) 등도 유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윤진수(2018) pp. 500~501. 참고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인이 정해지는 것을 유언상속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을 허용하지 않음. 즉, 우리법에서 상속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질 뿐이고,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법정상속인 이외의 다른 자를 '상속인'으로 정할 수는 없음. 윤진수(2018), p. 291

4) 미국에서는 유언대용수단(Will-substitute)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임. Restatement(Third) of Property: Wills and Other Donative Transfers(2003) § 7.1 (a)는 유언대용수단을 "증여자의 생존 시에 마련된, 재산(Property)이나 계약상 권리에 대한 계획으로서, (1) 재산이나 계약상 권리를 보유 또는 행사할 권리가 증여자의 사망 시에 상속재산 법정관리 절차(Probate) 밖에서 수증자에게 이전되고, (2) 증여자의 생존기간 동안에는 증여자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Dominion), 관리(Control), 보유(Possession), 행사(Enjoyment)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 글에서 사용하는 상속대용수단이라는 단어는 유언대용수단과 뜻하는 바가 거의 같음.

이에 비해 독일법에서는 상속대용수단이나 유언대용수단이라는 단어보다, 사망 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생전처분(Lebzeitige Verfügungen auf den Todesfall) 또는 사망 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생전 법률행위(Rechtsgeschäfte unter Lebenden auf den Todesfall)라는 표현이 자

정상속이나 유언과 같은 전통적 제도가 갖고 있는 경직성과 획일성을 보완하여, 피상속인이 보다 유연한 상속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즉 상속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⁵⁾⁶⁾ 생명보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 대륙법계 국가인지 영미법계 국가인지를 불문하고 -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상속대용수단이다.⁷⁾ 생명보험을 통한 부의 이전은 법정상속이나 유증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우선 생명보험을 통한 재산승계 시 유언과 같은 엄격한 요식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은 생명보험이 결합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자신의 생존기간 동안의 - 퇴직, 질병, 노령화 등에 대비한 - 생활보장과 자신의 사망 이후 유족의 생활보장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다.

생명보험을 통한 부의 이전은 법형식상 법정상속이나 유언을 통한 부의 이전과 구별된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상속법이 아니라 계약법 및 보험법 고유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명보험을 통한 보험수익자로서의 부의 이전은, 유증을 통한 수익자(受遺者)로서의 부의 이전과 기능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⁸⁾ 법형식을 강조하여 양자를 전혀 다르게 취급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

주 사용됨. 사인증여(Schenkungsversprechen von Todes wegen: 독일 민법 제2301조)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러한 법률행위의 대표적 예임

- 5) 유연한 상속계획의 마련이라는 점에서는 특히 신탁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피상속인은 신탁을 통해, ① 상속개시 후 일정시점까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② 수익자를 순차로 지정하여 여러 세대에 걸친 재산승계를 미리 정할 수 있음. 법정상속이나 유언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재산승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최준규(2016), p. 1127
- 6) 미국에서 유언대용수단은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거쳐야 할 상속재산 관리절차(유언을 한 경우 유언 검인(檢認)절차도 거쳐야 함)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Avoiding probate), 활용할 실익이 있음(시간과 비용의 절약, 비밀의 보장 등). 이에 관해서는 우선 John H. Langbein(1984)를 참고하기 바람. 그러나 우리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상속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이 원칙이고, Probate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의 파산은 예외적 절차일 뿐임(이러한 절차가 개시되면 별도의 신청 등이 필요하고,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항상 선임되는 것도 아님). 따라서 우리법에서 상속대용수단이 갖는 기능과 미국에서 유언대용수단이 갖는 기능은 같지 않다. 상속대용수단에 관한 외국의 논의를 살펴 볼 때에는, 그 대용수단이 해당 나라만의 독특한 맥락 또는 배경과 관련이 있는지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 각 나라별로 어떠한 유언대용수단이 쓰이는지, 그러한 수단이 쓰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비교법적 개관으로는 Passing Wealth on Death, ed. by Alexandra Braun, Anne Röthel(2016) 참조

7) Alexandra Braun & Anne Röthel(2016), p. 339

8) 이에 관해서는 본문 II. 참조

게 취급함으로써 불공평한 결론에 이를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해석론의 차원에서 생명보험의 법률관계를 검토할 때에는 ① 상속법 규정들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② 상속법의 법리를 반영하여 보험약관이나 보험법 규정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입법론의 영역에서도 필요하다. 생명보험 관련 보험법 규정이 유증 관련 민법 규정과 다르다면, 그러한 차이가 어떠한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검토의 결과 양자를 달리 규율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양자를 가급적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질서의 통일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 중 상속법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 그에 대한 공평타당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모색해 본다. 검토할 구체적 쟁점은 ①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변경의 법적 성격, ②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변경의 가부,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 수익자의 확정, ④ 생명보험과 유류분·특별수익의 관계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이미 훌륭한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⁹⁾ 그러나 민법과 보험법 법리의 교차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다른 나라는 위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바람직한 입법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생명보험계약의 법률관계를 개관하고 수익자 지정·변경행위와 유증은 어떠한 점에서 비슷하거나 다른지 살펴본다(II). 이어서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변경행위의 법적 성격(III),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변경의 가부(IV),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망 경우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생명보험 수익자의 확정문제(V), 생명보험과 유류분·특별수익의 관계(VI)를 검토한다. 끝으로 보험계약자가 신

9) 양희석(2017); 노일석(2010); 정진욱(2014); 박인호(2016); 이승환(2017), p. 373 이하; 장경환(2004); 장경환(1993); 김은경(2014); 정구태(2011); 홍진희·김판기(2011a); 홍진희, 김판기(2011b); 홍진희·김판기(2012a); 홍진희·김판기(2012b); 최병규(2013); 유주선(2015)

탁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생명보험의 이익을 누릴 사람은 신탁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생명보험신탁’), 본문 II 내지 VI에서 살펴본 논의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간략히 살펴본다(VII).